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所得稅法上 推計課稅制度에
관한 研究



2009년 2월

釜慶大學校 經營大學院

經營學科(稅務管理專攻)

全 泰 鎬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所得稅法上 推計課稅制度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朴 泳 炳

이 論文을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9년 2월

釜慶大學校 經營大學院

經營學科(稅務管理專攻)

全 泰 鎬

全泰鎬의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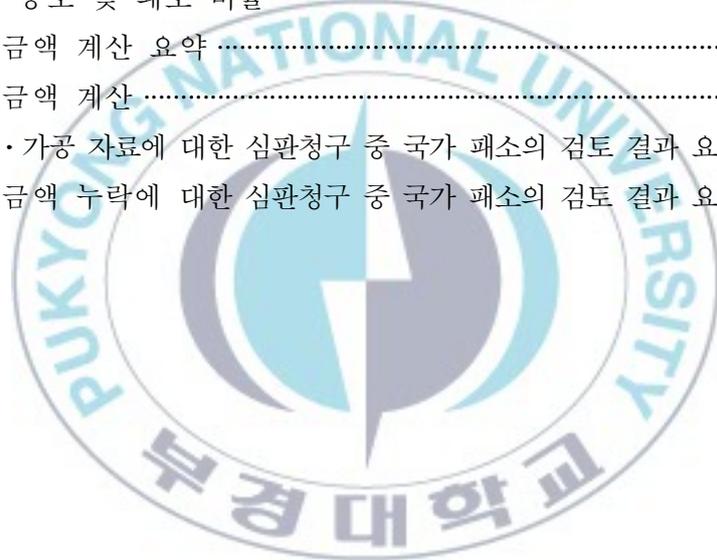
主 審	經營學博士	金 泰 容	印
委 員	經營學博士	金 鎮 晁	印
委 員	經營學博士	朴 泳 炳	印

< 목 차 >

Abstract	iv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제 2 장 추계과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3
제 1 절 우리나라의 추계과세제도	3
제 2 절 주요 국가의 추계과세제도	13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15
제 3 장 추계과세의 심판청구 및 판례의 동향	18
제 1 절 추계과세의 소송	18
제 2 절 추계과세의 심판청구 및 판례 동향	23
제 4 장 심판청구의 판결 내용 분석	29
제 1 절 위장·가공매입 부인후 결정과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	29
제 2 절 위장·가공매입 부인후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분석	33
제 3 절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분석	40
제 5 장 추계과세소송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제 1 절 추계과세소송에 따른 문제점	51
제 2 절 추계과세소송에 따른 문제의 개선방안	52
제 6 장 결론	57
참고 문헌	61
부 록	63

< 표 목 차 >

<표 1> 기장신고 대상	5
<표 2> 무기장신고 대상	5
<표 3>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 제도의 비교	11
<표 4> 종합소득세 신고 분포	12
<표 5> 주요국가의 추계과세방법 비교	15
<표 6> 관례 및 심판청구의 연도별 분포	24
<표 7> 국가 승소율 분포	24
<표 8> 심판청구 및 관례의 유형별 분포	25
<표 9> 심판청구 유형별 국가 승소 및 패소 분포	27
<표 10> 위장·가공매입 부인후 결정과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에 대한 국가 승소 및 패소 비율	28
<표 11> 소득금액 계산 요약	31
<표 12> 소득금액 계산	32
<표 13> 위장·가공 자료에 대한 심판청구 중 국가 패소의 검토 결과 요약 ...	39
<표 14>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심판청구 중 국가 패소의 검토 결과 요약 ...	49



< 그림 목 차 >

<그림 1>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유형	13
<그림 2>	판례의 유형별 분포 비율	25
<그림 3>	심판청구 유형별 분포 비율	26
<그림 4>	심판청구 유형별 국가 승소 및 패소 분포	27



A Study on the Estimated Income Tax System

Tea-Ho Chun

*Majoring in Tax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resent time taxpayers return own sales as they count their taxes by themselves. but the Standard Income Rate System(SIRS) obstructed that taxpayers count their taxes by themselves. and SIRS made them count taxes as the Standard Income Rate. because of this, taxpayers don't count taxes by book-keeping.

Since 2003, The Income Tax System(ITS) has enforce Standard Expense Rate System(SERS). SERS make taxpayers verify their costs and they have to keep their documentary evidences.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problems of the Estimated Income Tax System(EITS) that was changed SERS through Appeal to Tax Tribunal(ATT) and Judicial Precedent(JP). and I have two results.

First, if falsehood book-keeping rate is 50% or more, ATT said taxpayer is right.

Second, falsehood book-keeping rate is 50% under and the case which is of 30% or more, ATT said taxpayer is right with different reasons.

Through the ATT, we can find serveral problems of EITS.

First, increase of tax payment cooperative expense.

Second, increase of mental loss.

Third, increase of taxpayer not to trust in National Tax Service(NTS).

Fourth, the waste of administrative expense.

Fifth, about tax evasion social recognition feebleness.

To change these problems, I suggest several alternative ideas.

First, it's need for NTS to maintain the published rulings and internal guides.

Second, it's need the magnification of education about book-keeping and tax for taxpayers.

Third, it's need the magnification of education about tax for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Fourth, it's need for taxpayers to use tax advis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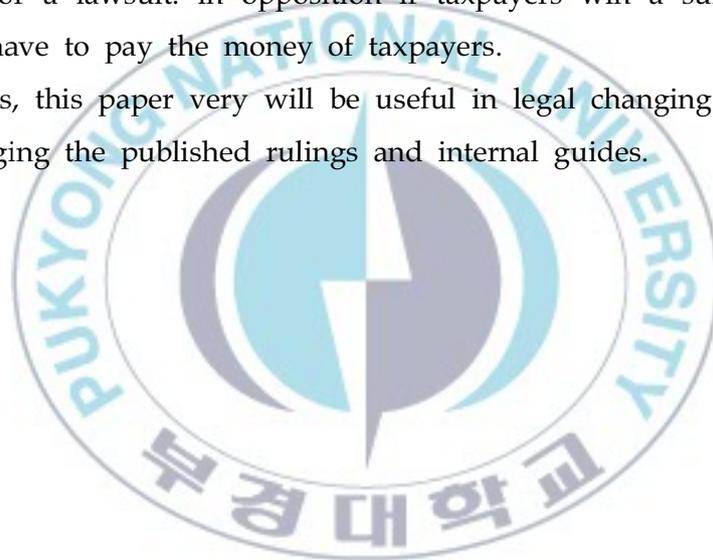
Fifth, it's need to develop the simple tax program.

Sixth, book-keeping obligation of business owner of above schedule size.

Seventh, it's need to change social recognition about tax evasion.

Eighth, If taxpayers lose a suit from a lawsuit, taxpayers have to pay NTS' money for a lawsuit. in opposition if taxpayers win a suit from a lawsuit, NTS have to pay the money of taxpayers.

Based on this, this paper very will be useful in legal changing which is active or changing the published rulings and internal guides.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막론하고 자연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며,¹⁾ 구체적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소득 중에 특별히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바, 이들 소득을 과세관청에 신고시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후의 금액인 소득금액이 1차적으로 과세의 기준금액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5년부터 2001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분까지는 표준소득률 제도를 도입하여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나 2002년 귀속부터는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다.

표준소득률제도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능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없이 법에서 일정률의 소득을 계산하여 주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기장의지를 저해하고 납세자의 실제 소득금액과 추계소득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또한 표준소득률의 수준에 맞추어 소득세를 신고하는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과세관청 내부 및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개선의견이 제시되어 오던 중 2002년 귀속분부터는 기준경비율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중이다.

먼저 기준경비율제도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경비의 입증을 납세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경비율제도 역시 현재까지 6년 동안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영세사업자의 기장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포함하면서 표준소득률제도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

이에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종합소득세의 추계과세에 대한 의견충돌이 끊임없이 있어왔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중국에는 추계과세와 관련하여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1)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세법 요약」, 2005, 1쪽

등 불복청구 및 급기야 법원에 소송까지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불복청구 및 소송에 따른 노력과 시간의 소요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국가는 불복청구 등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계과세소송과 관련된 심판청구 및 판례를 분석하여 국가 패소된 사건을 중심으로 판결결과의 주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납세자는 물론 국가의 경제적인 비용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추계과세제도에 대한 문헌연구와 함께, 추계과세소송과 관련된 심판청구 및 판례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동향을 분석함은 물론, 추계과세소송과 관련된 심판청구 및 판례의 내용을 분석적 방법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추계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는 물론, 국세청 자료와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추계과세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가의 추계과세제도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을 하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뀐 이후에 제기된 추계과세관련 법원 소송 및 조세심판원(구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의 내용과 최근 경향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된 문제를 중심으로 심판청구의 판결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심판청구의 판결 내용의 분석결과로 나타난 현행 추계과세제도인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제6장에서는 이를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제 2 장 추계과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우리나라의 추계과세제도

1. 의의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납세자는 세법 지식에 대해 무지하고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도 자신의 실제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2. 기준경비율 제도

기준경비율제도는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증빙자료의 수수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그 도입배경이라 할 수 있으며,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2002년 귀속분부터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라면 사업을 영위할 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 이에 기준경비율제도는 사업자의 기본비용인 주요경비²⁾

2)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② 임차료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③ 인건비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text{소득금액①}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다만, 일정규모미만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표준소득률제도와 같은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이 계산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begin{aligned} \text{일정규모미만 소규모사업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 \text{소득금액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 \text{수입금액} \times (1 - \text{단순경비율}) \end{aligned}$$

하지만 표준소득률제도에서 기준경비율제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조세마찰 및 세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³⁾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⁴⁾ 다시 말하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한 자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소득금액①)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소득금액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소득금액③)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한 금액(소득금액③)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09귀속분까지 적용예정). 이러한 배율은 수입금액의 연도별 귀속에 따라 다르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2년귀속 1.2배, 2003년귀속 1.4배, 2004년귀속 1.5배, 2005년귀속 1.7배, 2006년귀속 2.0배(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는 1.8배), 2007년귀속 2.4배(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는 2.0배)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③

$$\text{소득금액①} > (\text{소득금액②} \times \text{배율}) \text{인 경우}$$

$$\text{소득금액③} = \text{소득금액②} \times \text{배율}$$

그리고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해야 되는 사업자와 추계로 신고가 가능한 사업자를 정리하면 <표 1> 및 <표 2>와 같다.

또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표 1>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고, 그것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⁵⁾ 만일 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

<표 1> 기장신고 대상

업 종	복식부기의무자 (전년수입금액)	간편장부대상자 (전년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보험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7천5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표 2> 무기장신고 대상(2006년 및 2007년 귀속)

업 종	기준경비율 (전년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전년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7천2백만원 이상	7천2백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보험업	4천8백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3천6백만원 이상	3천6백만원 미만

그리고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세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에 표준소득률제도와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신고⁷⁾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일정금액 이상의 경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6) 소득세법 제81조 8항.

우에는 추계신고로 무기장신고임에도 주요경비는 납세자가 관련증빙을 제출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

다만,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며,⁹⁾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표 2>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¹⁰⁾

$$\text{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 \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times (\text{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또한 타가사업자 및 자가사업자¹¹⁾에 대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시 유의할 점이 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타가사업자의 경비율을 일반율로 제정하였으며 자가사업자의 경비율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에는 일반율에서 업종 구분 없이 0.3%(절대치)를 차감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타가와 자가의 비용 차이는 사업용 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 차이를 수입금액의 0.3%를 평균비율로 인정한 것이다.

$$\text{자가사업자용 단순경비율} = \text{타가사업자용 단순경비율} - 0.3$$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에는 업종 구분 없이 기준경비율에 0.4%(절대치)를 가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임차료는 주요경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하므로, 자가사업자에게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3항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및 제145조

11) 타가사업자 :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자가사업자 : 자신의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는 건물 감가상각비 평균비율(0.4%) 만큼을 기준경비율에 가산하도록 한 것이다.

$$\text{자가사업자용 기준경비율} = \text{타가사업자용 기준경비율} + 0.4$$

다만,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업, 인적용역, 특정 사업장이 필요 없는 업종으로서 지정한 업종¹²⁾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않는다.¹³⁾

그리고 인적용역사업자(94****)의 단순경비율 초과율 적용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4천만원 초과인 인적용역사업자를 적용대상자로 하며,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초과율을 적용한다.¹⁴⁾ 왜냐하면 인적용역 제공사업의 경우 수입금액이 증가할수록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는 그에 비해 적게 증가하므로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고액수입자의 소득이 과소계상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다만,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¹⁵⁾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12 / \text{사업월수}) \times (1 - \text{단순경비율})\} \times \text{사업월수} / 12$$

이 경우 사업월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하

12) 이러한 업종으로는 522099(소매업, 기타 음식료품, 음료품 배달 소매), 523132(소매업, 화장품 및 화장비누, 화장품 외판 소매), 525200(소매업, 다단계 판매원 소매 수입), 741108(서비스(사업관련)업, 법무관련서비스업, 집행관(구 집달관)), 950001(서비스(가사)업, 가사서비스업, 가사보조원)이 있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국세청, 「2007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08, 11쪽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및 국세청, 위의 책, 2008, 10쪽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4항

고,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¹⁶⁾ 그리고 1년 환산 수입금액이 4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한다.¹⁷⁾

그리고 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경감율을 적용하는 바, 이는 단 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경감율(단순소득률의 20% 가산)을 적용한다.¹⁸⁾

$$\text{장애인적용 단순경비율} = \text{단순경비율} + (1 - \text{단순경비율}) \times 20\%$$

그리고 <표 1>, <표 2> 등에서 정한 금액에 의거하여 정해진 신고유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으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한편 장부대상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의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된다.¹⁹⁾

반면, 한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15%²⁰⁾(복식부기) 또는 10%(간편장부)의 기장세액공제를 받게 된다.²¹⁾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거래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가능하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절세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못하는 경우일지라도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여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소득세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및 국세청, 앞의 책, 2008, 10쪽

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및 국세청, 앞의 책, 2008, 10쪽

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및 제143조

19) 소득세법 제81조

20) 2008년 귀속분부터 한편장부대상자 중 복식부기기장자는 20%로 인상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3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는 모두 추계에 의한 신고로서 개별 사업자의 사정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특수한 비용이 있는 경우 등 사업실상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추계과세제도의 변화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는 2001년 귀속분 이전은 표준소득률제도를, 2002년 귀속분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먼저 표준소득률제도를 살펴본다. 표준소득률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소득률을 말하며, 표준소득률제도란 수입금액에서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표준소득률}$$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법지식에 대한 무지로 인해 기장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장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로 인해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평균 소득률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왔다. 하지만 동일한 업종이라도 납세자의 영업능력, 자본능력 등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소득률제도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이 기장능력이 충분함에도 이를 회피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시의 소득금액을 상호 비교하여 그 금액이 비슷한 경우에는 기장신고에 따른 불편함²²⁾ 및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표준소득률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과세관청 내부 및 관련 단체 등에서 꾸준히 표준소득률제도의

22) 이러한 불편함으로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등이 있다.

문제점을 제기하여 온 바, 2002년 귀속분부터는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기준경비율제도를 표준소득률제도와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는 납세자에 대한 경비의 입증책임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표준소득률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배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의무 및 기준경비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가능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부득이 복식부기 기장의무 및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 제도의 비교

구분	표준소득률	기준경비율
1. 대상자	- 무기장사업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	-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대상자로 구분
2.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 X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1)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 실지 지출한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 소득금액 2)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3. 소득세 신고	- 무기장신고금액 - 무신고자 획일적으로 적용 - 납세자의 개별실상 반영불가	- 무기장자도 자기소득금액을 계산 신고 -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는 실지 지출한 경비만 인정 - 납세자의 개별실상반영
4. 소득세 조사에 대한 부담	-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적고 매출 누락에 대한 세부담이 장부기장자에 비하여 유리. 따라서 기장자는 원가 입증 못하면 전액 소득에 가산하는 것에 비하여 무기장자는 세부담 유리	- 추계신고자도 실지경비 인정부분은 소득세 조사가 가능하므로 신고분에 대한 허위사실 판명시 납세자 불이익 - 무기장자도 기장자와 같은 세부담을 함. 즉 무기장자도 원가입증 못하면 일정액 소득가산
5. 기장제도 확립에 기여	- 무기장지 세무조사에 대한 저부담과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부정적	- 기장유도가 비교적 확실할 것으로 예상
6. 기장자의 소득조절	- 표준소득률이 미리 발표되어 표준률에 의한 소득조절 용이	- 기준경비율은 소득조절 기준으로 사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고 전 발표로 소득조절이 가능
7. 자료 양성화	- 무기장자는 정규 영수증 수취기피로 영수증에 대한 인식부족	- 주요경비지출증빙이 필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할인점, 폐업자의 자산취득 등으로 자료양성화에 걸림돌이 됨.
8. 장단점	- 영세납세자의 경우 소득 신고시 유리	- 종업원의 경우 가처분소득감소로 인한 노사 마찰 가능성 증가 - 영세사업자의 장부기장비용, 인건비신고, 4대 보험료 증가로 인하여 비용 증가.
9. 개선사항	- 영세소상인에게는 납세협력비용이 적게 소요되었으나, 소득세의 근거과세를 늦추는 역할만 수행하였음.	- 기준경비율 제도 역시 폐지함으로써 장부기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함.
10. 재정기관	국세청기구 중 표준소득률심의회	국세청기구 중 기준경비율심의회

자료 : 송영임,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44~46쪽.

4. 우리나라의 추계신고 현황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중 최근 3개년간의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인원 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종합소득세 신고 분포

(단위 : 명)

연도		2004	2005	2006
납세인원 ¹⁾	합계	4,363,257	4,369,881	4,580,357
	과세미달추정인원	2,071,336	1,954,779	1,718,328
	확정신고 대상인원	2,291,921	2,415,102	2,862,029
확정신고인원 ²⁾	합계	2,235,905	2,279,497	2,736,478
	기장신고인원	1,143,900	1,230,024	1,394,979
	추계신고인원	989,294	965,662	1,221,082
	비사업자	102,711	83,811	120,417

주1) : 납세인원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작성(비사업자 제외)

주2) : 확정신고인원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로서 과세미달자(비사업자로서 과세미달자는 제외됨).

자료 : 국세청, 「한 눈에 보는 국세통계」, 2008, 19쪽.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1997년의 1,299천명에서 2006년에는 2,736천명으로 2.1배 증가하였으며, 기장신고인원도 1997년 505천명에서 2006년 1,395천명으로 2.8배 늘어났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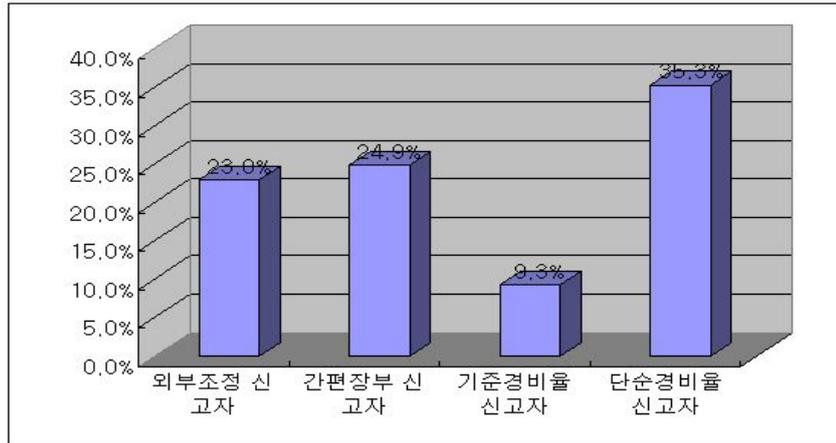
또한 기장신고율은 2006년 현재 53.3%로 장부에 의한 근거과세가 정착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크게 장부에 의한 기장신고자와 추계신고자로 구분되며, 기장신고자는 다시 외부조정, 자기조정, 간편장부신고자로, 추계신고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외부조정신고자가 23.0%, 간편장부 신고자는 24.9%, 기준경비율 신고자는 9.3%,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35.3%이다.²⁴⁾

23) 국세청, 「한 눈에 보는 국세통계」, 2008, 18쪽

24) 위의 책, 18쪽



<그림 1>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유형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조정 및 간편장부 신고자의 비율을 합한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47.9%로 장부에 의해 신고한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주요 국가의 추계과세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추계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추계과세제도를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좀 더 구체적인 추계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경우 소득세법 제154조에 의거 「세무서장은 거주자와 관계되는 소득세에 관하여 그 자의 재산 또는 채무의 증감상황, 수입 또는 지출상황이나 생산량, 판매량, 기타의 취급량, 종업원수, 기타 사업규모에 의하여 그 자의 각 연도의 각종 소득금액 또는 손실금액을 추계하여 소득세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제한적이면서 한정적인 제한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이 근간이 된다면 어떠한 추계과세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 예시설을 따르고 있다.²⁵⁾

25) 안경선,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소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15쪽.

미국의 경우에 내국세법 제446조 b항에서 「납세의무자가 기장에 있어서 규칙적으로 채용한 회계방법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채용한 회계방법이 소득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과세소득 계산은 국세청장이 소득을 명확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순자산법, 소비액법, 은행예금액법, 비율법 등이 있다.²⁶⁾

독일의 경우에 조세기본법 제162조 제1항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의 기초를 조사 또는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추계하여야 한다. 추계를 하는 때에는 추계상 중요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추계과세방법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추계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총재산비교법, 금융계산법, 기업비교법 등이 추계과세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다.²⁷⁾

프랑스의 경우는 추계과세소득을 산정하는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추계기준의 합계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추계소득금액의 규정요소 중 7개 항목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추계소득금액이 과세 최저한 금액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추정소득금액의 50%를 가산한다. 추계소득금액의 산정요소에는 생활수준을 가늠케하는 지표로서 특정한 재산의 소유와 가사사용인의 고용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생활수준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금액에서 추정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의 대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비용이나 손실을 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그가 소비하는 자금을 상속받았거나 차입함으로써 그와 같은 재원에 의하여 그의 생활양식의 비용을 지출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²⁸⁾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추계과세제도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26) 안경선, 앞의 논문, 19쪽~22쪽.

27) 안경선, 앞의 논문, 22쪽~23쪽.

28) 안경선, 앞의 논문, 25쪽.

〈표 5〉 주요국가의 추계과세방법 비교

구 분	우리나라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납세의무 확정원칙	실액과세방법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추계과세 요건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 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 장부의 기재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 자가 장부 제시를 거부하거나 비협력적인 경우	- 신고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사실의 정당성에 대한 보증을 거부하는 경우 - 장부 또는 기록 을 제시 할 수 없는 경우 - 증빙자료에 관한 설명 의무 등에 위반하는 경우	- 법령상의 기장의무를 불이행하거 나 - 장부기장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가 장부 등을 제시 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거나 - 신고소득과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 간에 현저 한 차이가 있는 경우 - 특정소득에 대한 협의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추계방법에 관한 규정의 성격	제한적 규정	예시적 규정	좌동	좌동	좌동
추계방법의 종류	기준경비율법 단순경비율법 동업자권형법 본인소득률법	순자산증가법 소비액법 은행예금법 효율법 비효율법	총재산비교법 총금융계산법 기업비교법	순자산법 현금지출법 은행예금법 비율법 등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 방법 협의과세제도 등
추계방법의 운용	- 조세법률주의 - 추계방법의 엄격적용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자료 : 정해욱, “추계과세제도가 기장사업자의 신고소득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회계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43쪽.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기준경비율 등의 추계과세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몇몇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선행 연구자들은 추계과세제도에 대해 어떻게 연구하였고 어떠한 개선점을 제시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조윤숙(2004)은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실제적인 계산 사례 등을 들어가며 분석하고, 기장신고자 및 단순경비율 신

고자의 과세형평성 문제, 경비 등의 입증책임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제시한 후, 기장자에게 세액공제의 확대, 세무조사 우대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제시하였다.²⁹⁾

김형상(2006)은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보통의 접근방식과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추계소득시 가구의 소비 유형, 승용차, 회원권, 자녀유학여부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추계과세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자료를 수집하여 골프 세트 등 18개 사치성자산을 독립변수로 지정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치성 자산이 탈루소득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아내었다. 그는 사업소득자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는 바, 그 기대이익이 크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개인이나 가계의 실소비지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제도적 뒷받침을 이루고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순자산증가법, 소비액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³⁰⁾

김명호(2004)는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에서 외국사례 및 문헌 등을 통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그로 인해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들이 경비를 입증해야 하는 것에 따른 협력비용의 증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의 수수행위 증가, 외국에 비해 추계과세제도가 너무 획일적인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으며 또한 기장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세무조사 등 강력한 행정행위를 통해 추계보다는 기장사업자가 증가하도록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³¹⁾

김상원(2005)은 “소득세의 추계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추계과세는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의 보관 등 조세법상 각종의 협력의무를 불이행하여 과세관청이 장부 등에 의한 직접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합리성 있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불가피한 납세의무의 확정방법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추계과세제도의 여러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액과세가 일반화되기 위해 금융실

29) 조윤숙,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0) 김형상,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31) 김명호,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명제의 보완, 신용카드 등의 사용 활성화 등 조세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조세 회피 내지 탈세가 자동적으로 발각되게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성이 간접적으로 강제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개선점으로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의 요건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를 추가·보완하여 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며, 추계방법을 한정하지 않고 합리성이 있는 한 모든 추계방법의 사용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기준금액을 업종에 상관없이 소규모사업자의 기준금액인 4,800만원으로 단순화하고, 특별히 자료상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³²⁾



32) 김상원, “소득세의 추계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제 3 장 추계과세의 심판청구 및 판례의 동향

제 1 절 추계과세의 소송

1. 의의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연구하고자 하는 추계과세의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그 동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납세자가 장부기장 또는 외부조정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이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누락을 하였거나 부당하게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경우 과세관청은 매출누락한 금액을 수입금액에 증액하거나 부당하게 공제받은 필요경비를 감액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득금액이 재계산되어 결국에는 소득금액이 증액되어 과세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납세자는 실제보다 소득금액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으로 단순경비율 등의 추계로 과세액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심판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데 이를 추계과세의 소송이라고 한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납세자의 납세의식 향상 및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인식의 향상 등으로 많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은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과세를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현재 과세관청에서는 전산시스템의 개선 및 향상으로 과세여건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전산시스템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추계과세와 관련된 심판청구와 소송이 매년 5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그 증가세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추계과세에 대한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세무조사나 자료처리에 의거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로 신고한 납세자가 차후에 매출누락이나 부당하게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실이 발견되었

을 때, 당초 신고한 장부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입금액만 증가시키거나 부당하게 계상한 필요경비만 불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의 납세자는 본인의 매출총이익률 등이 실제 매출액보다 너무 높으므로 추계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역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시 과세관청에서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신고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는 여러 가지 지출증빙을 제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2. 입증책임

그렇다면 심판청구 및 소송에서 납세자가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심판청구 등의 소송에서 과세관청이나 법원에 심판청구 및 소송을 제기할 때 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견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에 대한 심판청구와 판례의 견해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심판청구의 견해

국가의 패소, 즉 납세자가 승소한 경우의 심판청구에서는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을 추정하고 비록 납세자가 필요경비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영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비가 지급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의 정도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 추계로 결정하도록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심판청구의 견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필요경비인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가공경비라 하여 경비에서 부인할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매출원가 중의 물품구입액 전액을 지출증빙이 미비하다고 하여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의 특성상 합당하지 아니하고, 경정 후 결정소득률(55.3%)이 상당히 높게 계산되는 등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³³⁾

즉,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지만,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으로써,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의 정도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패소, 즉 국가가 승소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직·간접적으로 납세자에게 묻고 있다. 이러한 심판청구의 견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³⁴⁾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3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이와 같이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즉, 종합소득세의 추계 신고 및 결정에 앞서 지출한 증빙 등 필요경비를 납세자가 직접 제출하여 장부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 판례의 견해

판례의 경우는 심판청구보다 더욱 엄격하게 납세자에게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을 묻고 있다. 그 견해 또한 심판청구와 유사하나 판례의 의견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납세자 스스로 가공세금계산서와 나머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자 과세관청이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상단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당초 신고된 필요경비 외에 일부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을 뿐, 납세자가 신고한 총 수입금액 이외의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추가한 바 없고, 한편,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

이 납세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명백한 허위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납세자 스스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그 기재 내용이 실제거래에 부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이상,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납세자 제출 장부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证的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证的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³⁵⁾

즉,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고 그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다수 판례의 내용이다. 실제로 과세관청에서는 특별조사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납세자가 제시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단순히 구두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경비를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이에 판례에서는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상희(2006)의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른 견

35) 소득세법 제70조

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92누18139, 1993.5.13 판결)의 사례를 인용하여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³⁶⁾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인용된 사례는 1993년도에 이루어진 판결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아니라 표준소득률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때이다. 그 당시 소득세법상으로는 수입금액이 법에서 정해진 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표준소득률제도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추계로 신고할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그 어떤 제재도 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즉 세법에 의해 소득금액이 확정되어지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라는 문제조차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당시로서는 필요경비를 입증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도 소득세법상의 이러한 계산원리에 의해 판결을 하지 않은 것인가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추계로 신고하더라도 주요경비에 대한 관련증빙을 납세자가 제출하도록 소득세법이 변경된 것이고 이러한 소득세법상의 계산원리에 의해 역시 법원은 납세자에게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심상희 연구의 결론을 살펴보면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주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³⁷⁾

제 2 절 추계과세의 심판청구 및 판례 동향

36) 심상희,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4쪽.

37) 위의 논문, 52쪽~56쪽.

200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추계과세에 대한 심판청구와 판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자료수집한 결과 법원 판례 21건, 조세심판원³⁸⁾ 심판청구 123건이 되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³⁹⁾을 이용하여 자료수집한 사례 중 판례 1건, 심판청구 9건은 본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판례 20건, 심판청구 114건으로 총 134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계과세에 대한 판례 및 심판청구의 연도별 분포는 <표 6>과 같다.

<표 6> 판례 및 심판청구의 연도별 분포

(단위 : 건)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비율
판례	5	11	4	20	14.9%
심판청구	45	55	14	114	85.1%
합계	50	66	18	134	100%

판례와 심판청구 134건 중 판례는 20건으로 14.9%이고 심판청구는 114건으로 85.1%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판례 및 심판청구에 대한 국가승소율의 분포를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국가 승소율 분포

(단위 : 건,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판례	5(100)	11(100)	4(100)	20(100)
심판청구	32(71.1)	31(56.4)	10(71.4)	73(64.0)
합계	37(74.0)	42(63.6)	14(77.7)	93(69.4)

()안은 국가 승소비율

<표 7>을 보면 법원의 판례는 국가승소율이 100%이지만, 심판청구는 국가

38) 이는 1975년 4월 1일 국세심판소 개소하여 2000년 1월 1일 국세심판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8년 2월 29일 조세심판원으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9)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청내부망(인트라넷)을 통해 접속할 수 있음.

승소율이 6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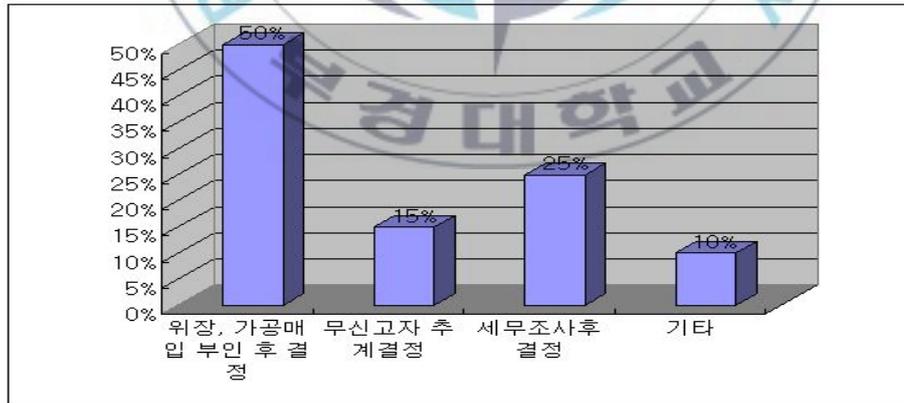
셋째, 판례 및 심판청구에 대한 유형별 분포는 <표 8>과 같다.

<표 8> 심판청구 및 판례의 유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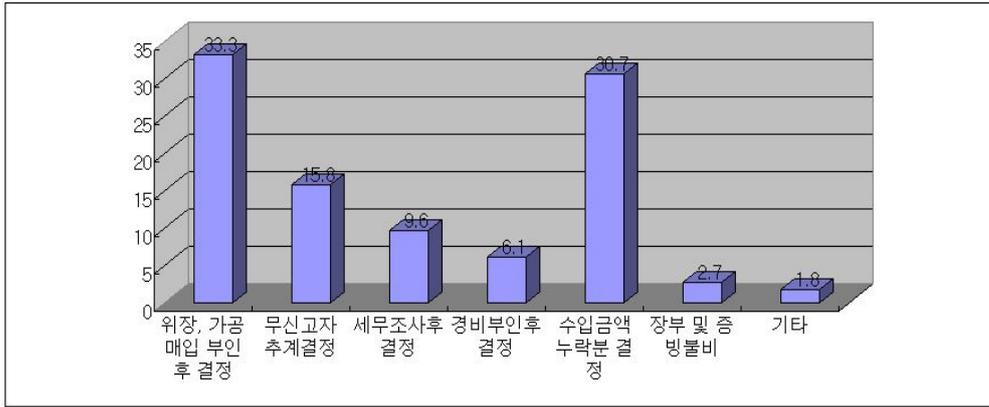
(단위 : 건,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심판 청구	판례	심판 청구	판례	심판 청구	판례	심판 청구	판례
위장·가공매입 부인후 결정	16 (35.6)	2 (40.0)	18 (32.7)	6 (54.5)	4 (28.6)	2 (50.0)	38 (33.3)	10 (50.0)
무신고자 추계결정	9 (20.0)	-	6 (10.9)	2 (18.2)	3 (21.4)	1 (25.0)	18 (15.8)	3 (15.0)
세무조사 후 결정	10 (22.2)	3 (60.0)	1 (1.8)	1 (9.1)	-	1 (25.0)	11 (9.6)	5 (25.0)
경비부인 후 결정	2 (4.4)	-	5 (9.1)	-	-	-	7 (6.1)	-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	7 (15.6)	-	22 (40.0)	-	6 (42.9)	-	35 (30.7)	-
장부 및 증빙불비	1 (2.2)	-	1 (1.8)	-	1 (7.1)	-	3 (2.7)	-
기타	-	-	2 (3.7)	2 (18.2)	-	-	2 (1.8)	2 (10.0)
합계	45 (100)	5 (100)	55 (100)	11 (100)	14 (100)	4 (100)	114 (100)	20 (100)

()안은 분포비율



<그림 2> 판례의 유형별 분포 비율



<그림 3> 심판청구 유형별 분포비율

<표 8> 및 <그림 2>를 보면, 법원 판례의 경우는 ‘위장·가공매입 부인 후 결정’이 50%를 차지할 만큼 소송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고 또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의견의 차이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표 8> 및 <그림 3>을 보면, ‘위장·가공매입 부인 후 결정’이 33.3%로 소송비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으로 30.7%의 소송비율을 보이고 있다. 양 유형을 합하면 추계과세제도에 대한 전체 소송 건수의 6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판청구 유형별 국가승소 및 패소의 분포는 <표 9>와 같다.

<표 9> 심판청구 유형별 국가 승소 및 패소 분포

(단위 : 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승소	패소	승소	패소	승소	패소	승소	패소
위장·가공매입 부인 후 결정	10	6	13	5	3	1	26	12
무신고자 추계결정	7	2	5	1	3	0	15	3
세무조사후 결정	8	2	0	1	-	-	8	3
경비부인후 결정	2	0	2	3	-	-	4	3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	4	3	10	12	3	3	17	18
장부 및 증빙불비	1	0	1	0	1	0	3	0
기타	-	-	0	2	-	-	0	2
합계	32	13	31	24	10	4	73	41



<그림 4> 심판청구 유형별 국가 승소 및 패소 분포

<표 9> 및 <그림 4>를 보면,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의 국가 패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위장·가공매입 부인 후 결정'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심판청구 유형별 국가패소율의 분포는 <표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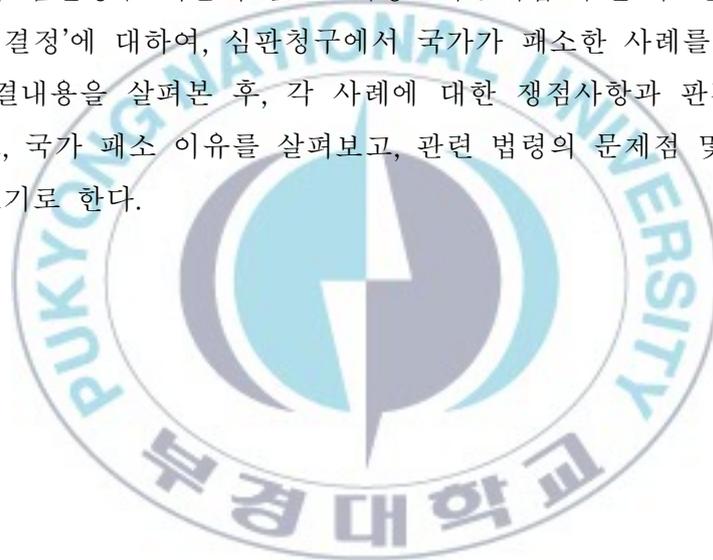
**<표 10> 위장·가공매입부인후 결정과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에 대한
국가 승소 및 패소 비율**

(단위 : 건, %)

구 분	승 소	패 소
위장·가공매입부인후 결정	26(68.4)	12(31.6)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	17(48.6)	18(51.4)

<표 10>을 보면,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에 대해서는 국가 패소의 비율이 51.4%로 국가 승소 보다 국가 패소의 비율이 더 높으며, ‘위장·가공매입 부인 후 결정’에 대해서도 국가 패소의 비율이 31.6%로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표 10>에서 국가패소 비율이 다소 높은 사례인 동시에 <표 8>에서 심판청구 비율이 높은 ‘위장·가공매입 부인 후 결정’과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에서 국가가 패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심판청구의 판결내용을 살펴본 후, 각 사례에 대한 쟁점사항과 판결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국가 패소 이유를 살펴보고,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제 4 장 심판청구의 판결 내용 분석

제 1 절 위장·가공매입 부인후 결정과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

1. 위장·가공매입 부인후 결정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일부 납세자는 매입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공제를 받아 세금을 적게 납부하고자 실제 거래 없이 위장·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즉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이에 100%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자료상 판정기준⁴⁰⁾에 해당하는 자료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를 자료상이라고 한다.⁴¹⁾

1) 위장매입의 의의

위장매입이란 실제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즉, 실제로는 A와 거래하였음에도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신고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실제 거래가

40) 박병완,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2007, 406쪽
자료상의 판정기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한 자
- ②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교부금액 대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자
- ③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비율이 50%미만이라도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 5억원 이상인 자

41) 위의 책, 406쪽

아님에도 납세자 본인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적게 내게 되고, B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과세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이중으로 탈세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 가공매입의 의의

가공매입이란 실제 거래한 사실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공제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무런 거래 사실 없이 단순히 경비와 관련한 서류만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또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는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행정에 막대한 지장과 과세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위장매입과 가공매입을 구별하고 있지만 심판청구와 판례 등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를 거의 구별 없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이 둘의 의미를 거의 구별 없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어차피 위장매입도 역시 가공매입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무적으로 위장매입과 가공매입을 명확하게 구별할 실익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심판청구와 판례를 살펴보아도 위장매입과 가공매입과 관련한 거래를 모두 가공매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위장·가공매입의 예시

이에 대한 내용을 <표 11>에서와 같이 단순화하여 좀 더 쉽고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외부조정 및 장부기장을 하여 <표 11>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조사를 통해 필요경비 중 20백만원이 가공매입으로 밝혀졌다면 과세관청에서는 필요경비를 40백만원만 인정하게 된다. 그리하면 소득금액이 60백만원이 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되므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납세자의 주장은 사뭇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표 11> 소득금액 계산 요약

구분	①수입금액	②필요경비	③소득금액 (①-②)	비고
납세자신고	100백만원	60백만원	40백만원	-
과세관청 결정	100백만원	40백만원	60백만원	가공매입 20백만원은 필요경비 불인정

20백만원이 가공매입으로 밝혀졌다면 이를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고 60백만원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납세자의 주장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20백만원이 가공으로 매입한 것임을 일단은 인정한다. 하지만 비록 그것이 가공매입이라 하더라도 다른 경비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어떤 납세자는 이에 다른 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며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납세자는 아무 증빙 없이 단순히 구두상으로만 실제로 경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납세자는 실제 경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단순히 경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로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납세자도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납세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과세처분을 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는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장·가공매입에 대한 심판청구의 판결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승소 비율이 68.4%에 달한다. 이는 국가의 승소율이 낮은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이를 바꾸어 말하면 약 32%는 국가가 패소를 한 것이고 과세관청이 잘못된 과세를 한 것이라고 판결을 한 것이다. 따라서 제2절에서 이러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2.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

1)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의 의의

‘수입금액 누락’이란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매출 누락’을 말하는 것이다. 즉 실제 매출을 하였음에도 이를 과세관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탈세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들 중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하면 <부록>과 같다. 즉, 병원에서 수술비 등을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받으면서 할인하여 주는 경우, 본인의 계좌가 아닌 친인척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법인의 매출을 개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의 예시

심판청구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납세자는 외부조정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매출신고가 불성실한 것으로 여겨 수정신고하도록 안내를 한다. 이에 납세자는 매출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인 인건비 등을 추가로 신고하게 되었고, 과세관청은 명확한 증빙이 없음을 사유로 이를 부인하고 매출 증액 신고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표 12> 소득금액 계산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고	
납세자	최초 신고	100백만원	60백만원	40백만원	-
	수정 신고	120백만원	80백만원	40백만원	수입금액 20백만원 및 인건비 20백만원 추가신고
과세관청 결정	120백만원	60백만원	60백만원	인건비 20백만원 불인정	

이를 <표 12>를 통해 요약하면 당초 납세자가 수입금액 100백만원, 필요경비 60백만원 및 소득금액을 40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수정신고를 요청하자 납세자가 수입금액 20백만원을 증액하여 신고하는 동시에 필요경비를 20백만원 증액하여 신고하였다. 즉 소득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필요경비 20백만원을 인정하지 않고 수입금액 20백만원만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60백만원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는 추가 경비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게 된다. 물론 납세자가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여 그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납세자는 아무런 증빙 제출 없이 구두상으로만 실제 경비가 지급되었음을 주장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아무런 증빙도 없는 경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과세관청과 납세자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납세자는 이의신청 등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국가 승소율을 <표 10>을 통해서 보면 48.6%로 50%에도 못 미치는 국가 승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심판청구 중 51%의 납세자가 승소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제3절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제 2 절 위장·가공매입 부인후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분석

1. 위장·가공 자료에 대한 심판청구

위장·가공 자료에 대한 심판청구의 국가 패소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사안별로 쟁점과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심2006서2156 (2006.10.02)

가. 쟁점

① 가공매입 자료에 대하여 국세청이 고시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매출원가를 총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경정소득율이 77.56%이고, 필요경비의 허위 기장율이 77.18%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결정 요건에 해당됨.

2) 국심2006중0902 (2006.11.08)

가. 쟁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나. 판결 요지

청구인이 주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과 이
건 관련 가공원가율이 30%내외수준이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주류매입금액
이 전체 주류 매입액 대비 56.7%~60.9%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해 볼 때, 주류매입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3) 국심2006중3178(2006.12.01)

가. 쟁점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라 하여
부인할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귀속 매출원가 중의 주류구입액인 쟁
점금액 전액을 지출증빙이 미비하다고 하여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주류
를 주요 원재료로 하는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합당하지 아니하고, 결정 후 결
정소득률이 55.3%이고,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은 45.9%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2001년 귀속 장부 및 증빙서류가 진실된 것이라
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함.

4) 국심2007중4073 (2007.12.31)

가. 쟁점

장부 및 증빙자료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
을 결정함으로써 결정소득률이 62.4%로 되었으며, 필요경비로 계상한 매출원
가계상액 중 73.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인함으로써 청구인의 매출원가 허
위기장률(가공매입액/매출원가계상액)이 전체 필요경비 계상액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73.1%로 산출되는 점으로 볼 때, 이 건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1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5) 국심2004구4062 (2006.09.13)

가. 쟁점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 내역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청구인은 자산규모가 1,691천원으로서 영세사업자이며, 컨테이너 사무실이 침수되어 관련 장부 및 제증빙 등이 본인의 관리소홀로 분실되는 등의 부주의로 총 매출액의 30.34%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 누락하였고, 경리직원도 없으며 기장능력도 없어 기장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건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6) 국심2006서1528 (2006.11.2)

가. 쟁점

-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②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판결 요지

쟁점 ①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종전 심판청구시에 제출할 자료 외 특별히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일부 다른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만으로 종전 결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결국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② : 청구인의 실제 주류매입액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 주류매입액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실제 주류매입처 및 주류매입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 전용카드 결제내역 및 쟁점매입계산서의 내용은 이미 종전 심판결정에서 그 신뢰성이 부인되어 이를 근거로 실제 매입액을 확정할 수도 없으며, 2002년의 경우 전체 매입액의 56%, 2003년의 경우 전체 매입액의 57%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부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전체가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어, 결국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실제 주류매입액을 확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출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7) 국심2006서3163 (2006.12.19)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할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는 경우 공사원가 허위기장률이 57.3%에 달하며,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경우 소득결정률은 60.6%에 달하여 냉·난방설비업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소득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2004년도 소득금액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추계로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8) 국심2006중3404 (2007.04.26)

가. 쟁점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청구인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율이 50%에 달하고, 실내장식업의 단순경비율이 85.4%이고 기준경비율이 9.8%인데 비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42.43%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9) 국심2007부4914 (2008.02.14)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2002년도의 가공매입액의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55.6%로 나타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나, 2003년도의 가공매입액은 매출원가 허위기장률이 32.9% 불과한 것으로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0) 국심2007서1309 (2007.06.04.)

가. 쟁점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청구인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이 1억 5천여만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자로서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율이 50.72%에 달하며, 귀금속 도매업의 단순경비율이 91.5%이고 기준경비율이 6.9%인데 비하여 처분청의 결정 소득률이 44.84%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함.

11) 국심2007서4126 (2007.12.31)

가. 쟁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허위기장 비율이 2004년 귀속분 28.9%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2002년 귀속 및 2003년 귀속은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이 각각 60.5%, 57.7%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같은 소매 귀금속의 단순경비율이 86.4%(소득률 13.6%)인데 반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2002년 귀속이 70.3%이고, 2003년 귀속은 67.6%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서류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12) 조심2008중0378 (2008.05.02)

가. 쟁점

가공매입원가 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이 건은 청구인이 2005년에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쟁점 매입액을 원가 부인하여 과세함으로써 상품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58.6%에 달하고 소득률이 51.7%에 달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004년의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허위기장율이 30.7%로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2004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위장·가공 자료에 대한 심판청구의 국가 패소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허위기장율 및 소득율의 정도에 대한 것으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위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위장·가공 자료에 대한 심판청구중 국가 패소의 검토 결과 요약

사건번호	업종	허위 기장률	경정 소득률	표준 소득률	비고
국심2006서2156 (2006.10.02)	도매 (건축자재)	77.18%	77.56%	8.2%	-
국심2006중0902 (2006.11.08)	유흥주점	30% (원가)	-	43.6%	청구외법인으로 부터의 주류매입 금액이 전체 주 류 매입액 대비 56.7% ~ 60.9% 수준
국심2006중3178 (2006.12.01)	유흥주점	45.9%	55.3%	43.6%	경정소득률 높음
국심2007중4073 (2007.12.31)	도매 (무역)	73.1%	62.4%	16.4%	-
국심2004구4062 (2006.09.13)	도소매 (건축자재)	30.34%	38.07%	8.2%	영세사업자로 기장능력부족, 사무실 침수로 관련증빙없음
국심2006서1528 (2006.11.02)	유흥주점	57% (원가)	69.84%	43.6%	-
국심2006서3163 (2006.12.19)	냉난방 설비업	57.3% (공사원가)	60.6%	4.8%	-
국심2006중3404 (2007.04.26)	실내장식업	50%	42.43%	14.6%	-
국심2007부4914 (2008.02.14)	의료기기 도소매업	55.6% (2002년) 32.9% (2003년)	49.9% (2002년) 33.2% (2003년)	7.6%	-
국심2007서1309 (2007.06.04)	소매 (귀금속, 약세사리)	50.72%	44.84%	8.5%	-
국심2007서4126 (2007.12.31)	소매 (귀금속)	60.5% (2002년) 57.7% (2003년)	70.3% (2002년) 67.6% (2003년)	13.6%	-
조심2008중0378 (2008.05.02)	제조업 (직물)	58.6%	51.7%	5.7%	-

<표 13>을 보면, 허위기장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요인과 관계없이 국가 패소가 되었으며, 허위기장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정소득률과 표준소득률의 비교 등 다른 요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분석

1.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심판청구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심판청구의 국가 패소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사안별로 쟁점과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심2006광2729 (2006.09.27)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판결 요지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간편장부 신고대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지출근거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금액 전부를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면 경정소득률은 45.52%이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은 41.68%에 달하여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2) 국심2006서3371 (2007.01.10)

가. 쟁점

장부등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나. 판결 요지

청구인이 영위하는 건설중기용역업(업종코드 453000)의 경우 총수입금액 대비 유류비 비중은 30~4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총수입금액의 9.67% 수준으로 신고한 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등 필요경비는 관련 장부 또는 증빙의 중대한 부분이 미비한 상태에서 신고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며,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계속사업자가 유류 등 매입비용에 관한 증빙을 보관·제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한 소득을 39.3%가 산술적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의 1.4배인 소득률 18.6%의 2배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 당초 신고시부터 장부 기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상태였다고 볼 것이어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3) 국심2006서3447 (2007.01.03)

가. 쟁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간편장부 신고대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지출근거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금액 전부를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면 경정소득률은 56.7%이고,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은 56.5%에 달하여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4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국심2006중1623 (2006.12.08)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대한 처분청의 2003년 경정소득률은 64.1%가 되고, 수입금액대비 누락신고비율은 46.5%로 산출되는 점으로 볼 때, 이는 관련법령에서 추계결정의 사유로 규정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5) 국심2007부0033 (2007.04.19)

가. 쟁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청구인은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기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율은 53.2%로 표준소득율(7.1%) 대비 749.2%이고, 당해년도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2.9%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인 기장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6) 국심2007서0410 (2007.07.12)

가. 쟁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처분청이 재경정한 소득율은 24.7%로 이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한식업종의 표준소득율 12.0%의 약 2.1배에 이르고,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은 40.6%에 이르는 등을 감안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이므로 추계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7) 국심2007서2655 (2007.10.01)

가. 쟁점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판결 요지

청구인의 당초 신고시 소득률은 1.2%이나 경정시에는 63.5%(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면, 청구인 해당 업종의 2005년도 단순경비율은 93.2%,

기준경비율은 14.6%, 2001년 표준소득률은 6.8%임)에 이르고, 수입금액은 2.7배, 소득금액은 137.9배 증가하였으며, 청구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63%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간편장부 대상자인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당초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함

(8) 국심2007서3723 (2007.12.07)

가. 쟁점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총수입금액 대비 35.18%에 달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경정하라는 주장의 당부

나. 판결 요지

청구인의 경우 허위기장률이 35.18%이고, 소득결정률은 40.13%에 달하여 동 업종 전국평균률 13.3%의 3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이 타당함

(9) 국심2007전0432 (2007.05.25)

가. 쟁점

매출누락에 대한 추계결정의 타당성 여부

나. 판결 요지

청구인이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원가 대부분을 부인한 것은 합리성이 없으며,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소득에 가산함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2004년도에는 86.8%에서 39.8%로, 2005년도에는 84.8%에서 40.0%로 현저히 낮아졌고, 수입금액 기장률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각 45.8%와 47.1%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10) 국심2005서1840 (2007.06.18)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신고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연립주택 신축판매업자에 대하여 비치 기장한 노무비가 부실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결국 필요경비에 산입된 인건비가 “0원”으로 되었다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청구인은 소규모 연립주택 신축판매업자로 경리직원 등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증가된 수입금액만 인정하고 대응원가(노무비)는 전액 부인함에 따라 당기공무원가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노무비는 “0원”으로서 노무비의 공무원가 허위기장률(노무비 허위기장금액/공무원가)이 100%인 것은 건설업의 특성상 현실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11) 국심2006중3740 (2007.03.23)

가. 쟁점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36.67%인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장부 등을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등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중 허위기장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6.67%이며, 또한 일반 소규모 이삿짐센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주경쟁이 치열하고 따라서 이윤도 적은 사실과 매출액 중 87%를 차지하는 주된 거래처인 대기업과의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수입금액 대부분이 소규모 이삿짐 운반관련 수입이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이삿짐센터는 수주경쟁이 심하여 이윤이 박한 현실에서, 청구인이 수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비록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나 그 장부로는 정당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

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12) 국심2006중3973(2007.02.08)

가. 쟁점

- ①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판결 요지

청구인의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은 신고수입금액의 101.5%가 되고, 동 금액이 전액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됨에 따라 결정소득률이 48.9%로 동 업종 표준소득률(14.6%)의 약 3.3배 수준이 되었으며, 또한 동 금액이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됨에 따라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50.4%로 산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인건비는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장부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함이 타당함

(13) 국심2007서1157 (2007.12.31)

가. 쟁점

- ① 청구인의 장부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③ 지출증빙불비가산세 부과시 대상금액을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판결 요지

처분청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추계조사로,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로 경정결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경정결과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신고금액 대비 10.6배(2003년)와 9.1배(2004년)로 증가하였고, 청구인의 필요경비는 모두 9.5배(2003년·2004년) 증가하였음이 확인되고, 경정비율은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모두 대략 9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초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에서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2002년도분에 대하여는 장부 미비·허위를 이유로 추계결정한 정황을 종합하면, 장부내용을 신뢰하여 이를 토대로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2003년도분 및 2004년도분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로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당함

(14) 국심2007서4040 (2007.12.14)

가. 쟁점

장부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판결 요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허위 기장율이 2003년 55.2%, 2004년 52.2%, 2005년 48.6%에 달하고 있는 점, 경정소득율이 51.2%~57.4%로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23.8%~25.7%)의 2배를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근거로 삼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3년~2005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15) 국심2007중1087 (2007.10.17)

가. 쟁점

청구인의 경우를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청구인의 경우 당해 귀속연도의 허위기장율이 55.5%이고, 청구인과 같은 의료기기 도매·상품중개업의 단순경비율이 92.4%, 기준경비율이 7.1%인데 반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57.7%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6) 국심2007중3307 (2008.05.13)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 내역이 기재된 노트 4장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누락한 매출금액을 포함하면 허위기장율이 43.27%에 해당하고, 경정소득률은 46.3%로 나타나 동 업종 표준소득률 7.6%의 6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17) 국심2007중4947 (2008.05.01)

가. 쟁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청구인의 경우,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는바, 동 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39.1% 및 41.8%나 되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이 합당하나, 이 건 과세처분시 쟁점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계조사결정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18) 조심2008서0004 (2008.06.26)

가. 쟁점

쟁점인건비 및 쟁점복리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예비적 청구로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판결 요지

이 건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누락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여 과세함으로써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이 2003년 45.8%, 2004년 40.8%, 2005년 38.8%에 달하고,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은 2003년 50.6%, 2004년 46.1%, 2005년 38.1%인데 반해 기준경비률은 2003년 12.5%, 2004년 11.9%, 2005년 11.3%이고 단순경비률은 2003년 74.3%, 2004년 75.6%, 2005년 76.8%인 점 등을 감안하면 수입금액의 허위 기장율과 경정소득율이 높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의 2배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그 근거로 삼은 장부는 중요한 부분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상과 같은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심판청구의 국가 패소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허위기장율 및 소득율의 정도에 대한 것으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위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4>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심판청구 중 국가 패소의 검토 결과 요약

사건번호	업종	허위 기장률	경정 소득률	표준 소득률	비고
국심2006광2729 (2006.09.27)	건설기계대여업	41.68%	45.52%	12%	경정소득률 높음
국심2006서3371 (2007.01.10)	건설중기용역업	33.6%	39.3%	12%	경정소득률 높음
국심2006서3447 (2007.01.03)	신문보급소	56.5%	56.7%	3.8%	-
국심2006중1623 (2006.12.08)	노래연습장	46.5%	64.1%	35.8%	경정소득률 높음
국심2007부0033 (2007.04.19)	식당	42.9%	53.2%	7.1%	경정소득률 높음
국심2007서0410 (2007.07.12)	한식업	40.6%	45.3%	12.0%	경정소득률 높음
국심2007서2655 (2007.10.01)	인터넷쇼핑몰	63%	63.5%	6.8%	-
국심2007서3723 (2007.12.07)	건설기계도급· 대여	35.18%	40.13%	13.3%	경정소득률 높음
국심2007전0432 (2007.05.25)	소매 (귀금속, 시계)	54.17%	60.2%	25.7%	-
국심2005서1840 (2007.06.18)	주택판매업자	100% (노무비)	27.1%	9.1%	-
국심2006중3740 (2007.03.23)	이삿짐센터	36.67%	42%	15.6%	경정소득률 높음
국심2006중3973 (2007.02.08)	서비스 (인테리어)	50.4%	48.9%	14.6%	-
국심2007서1157 (2007.12.31)	제조업 (직물원단)	90.59	14.53%	5.7%	-
국심2007서4040 (2007.12.14)	소매 (피자)	48.6%~ 55.2%	51.2%~ 57.4%	23.8%~ 25.7%	-
국심2007중1087 (2007.10.17)	의료기기 도매·중개업	55.5%	57.7%	7.6%	-
국심2007중3307 (2008.05.13)	제조 (철물, 창호)	43.27%	46.3%	7.6%	경정소득률 높음
국심2007중4947 (2008.05.01)	소매 (화장품)	39.1% (2005년) 41.8% (2006년)	48.17% (2005년) 48.94% (2006년)	12.9%	경정소득률 높음
조심2008서0004 (2008.06.26)	음식점	38.8%~ 45.8%	38.1%~ 50.6%	23.2%~ 25.7%	경정소득률 높음

<표 14>를 보면, 허위기장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요인과 관계없이 국가 패소가 되었으며, 허위기장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정소득률과

표준소득률의 비교 등 다른 요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추계과세소송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추계과세소송에 따른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납세자의 상당수가 추가경정예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추계과세 소송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 납세협력비용 증가(소송비용, 시간적 투자)이다.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불만을 제기하여 심판청구 및 소송을 한다면 납세자는 세무사 수수료, 교통비,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가 승소를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을 곳이 전혀 없다. 단지 부과된 세금만이 없어질 뿐이다. 또한 납세자는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심판청구 등을 제기한다면 그에 따른 시간적 부담을 안게 된다. 사업자의 경우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여야 할 시간에 심판청구 등을 하기 위해 세무사 등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하며, 직장인의 경우 연차 및 휴가 등을 내어 역시 세무사 등을 찾아다니며 심판청구 등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손실의 증가이다. 납세자에게는 세금의 부과 자체가 정신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함에도 잘못 부과된 세금임을 밝히기 위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전부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어떤 납세자는 세금의 부과 자체만으로 잠을 이루지 못 할 정도로 심리적인 압박감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쩌면 경제적, 시간적 손실보다 정신적인 손실이 가장 큰 손실인지도 모를 일이다.

셋째, 과세관청의 과세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 증가이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판례의 사례처럼 국가 승소율이 100%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현실은 그렇지 않고 상당수의 심판청구에서 납세자가 승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는 더 이상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납세자 및 국민들의 과세관청에 대한 불신은 그 무엇보다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넷째, 과세관청의 행정비용 낭비이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특별히 소송에 대한 업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겠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한 번의 과세처분에 대해 재차 심리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인력의 보충,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 가중에서부터 적게는 이에 대

비하기 위한 문서의 복사에 대한 경비 증가에 이르기까지 과세관청의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 승소의 경우 이러한 경비 부담이 역시 모두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탈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미약이다. 영국은 부가가치세율이 17.5%로 대단히 높으나 연간 4만5천파운드(약 7천만원)이하의 사업등록 및 부가세를 면제하는 등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제세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전통적으로 세무 불신고자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태도 때문에 감히 속일 생각도 하지 못한다.⁴²⁾ 그리고 프랑스는 1995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이 20.6%라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2,000프랑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탈루한 경우에는 벌금과 징역형을 병과한다. 심지어 법원의 공고 등 인격형에다 일부 세목은 공민권을 제한하고 운전면허도 주지 않는다. 또한 부당환급은 5년 징역에 50만 프랑의 벌금, 공모하여 탈세하면 5만프랑 벌금에 6개월 징역형이다.⁴³⁾ 또한 독일은 부가가치세율이 15%로 우리보다 높으며 전년도 2만 5천마르크 이하 또는 매출액이 10만 마르크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면제한다. 독일은 탈세하면 자유형이라는 벌금이 있어 자기의 일일 소득을 6개월간 부담하게 하는데, 많이 내는 사람은 하루에 1만마르크씩 부담하기도 한다.⁴⁴⁾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탈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도 관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하다. 특별히 세무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금을 탈루한 경제사범에 대해 법원은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고 더욱이 경제사범으로 구속된 일부 경제인에 대해 국가의 경제발전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특별사면을 통해 그 형을 면제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이것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세무신고의무를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으며 탈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해지고 탈세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제 2 절 추계과세소송에 따른 문제의 개선방안

추계과세소송에 따른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2) 정철수, 김원율, 김홍엽 공저, 「세금이 적어야 나라가 산다」(백산서당, 2001), 135쪽

43) 위의 책, 135쪽

44) 위의 책, 136쪽

첫째, 과세관청의 예규 및 내부지침 등의 정비가 요망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청구와 판례의 상충되는 부분을 과세관청 내부에서 조절하여 예규 등으로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유사한 사안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에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일선 과세관청에서 추계과세를 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에서는 추계과세와 관련한 최근의 심판청구 및 판례를 좀 더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판결요지 및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추계과세와 관련한 납세자의 불복의 경우 대부분이 단순히 필요경비만을 부인하였거나 수입금액만 증액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경우이다. 이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는 추계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제4장에서 이러한 심판청구 중 국가가 패소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허위기장률이 50% 이상인 경우 모두 추계과세가 타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적극적인 법 개정 또는 사무처리규정 등을 개정하여 외부기장자의 수입금액 누락 또는 부당경비 부인에 대한 추후 과세결정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과세관청의 담당직원이 임의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닌 모든 납세자가 충분히 예측가능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과세관청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유사한 사례를 과세할 경우에 과세처분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납세자에게 장부 기장 및 세금에 대한 교육의 확대가 요망된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납세자는 교육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으므로 장부 기장과 세금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한다면 납세자 스스로 장부에 대한 기장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효율적인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별도의 교육을 시행하는 등 납세자에 대한 장부 기장 및 세금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발급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협회에서 역시 영업과 관련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⁴⁵⁾

셋째,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세금 교육 확대(교과서 이용 등)이다. 사실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모든 국민은 세금에서 크게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세금은 우리 생애에서도 땀해야 땀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은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중·고등학생의 교과목의 한 단원이라도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간단한 계산사례를 소개하여 공부할 수 있게 한다면 세금에 대한 이해의 폭이

45)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음식점, 미용실 등에 영업허가증 발급시 일정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각 협회에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 등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다.

넓어지게 될 것이다. 그로인해 현재보다 세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장부 기장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세무대리인의 적극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요망된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할 경우는 변호사를 찾아가고, 건물 등을 취득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법무사를 찾아가서 의뢰를 한다. 하지만 세금신고 등과 관련해서는 전문자격사인 세무사 찾아가기를 무척 꺼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별도의 교육 등을 통해 장부기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나 세금계산상 특별한 사항에 있어서는 일반 납세자가 계산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정확한 세금계산을 위해 세무사를 찾아가서 세금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간편한 세무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납세자가 유용하고 편리한 세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영세한 납세자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고 사용이 쉬운 세무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을 납세자가 내려받기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력된 내용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대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본다.

여섯째,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기장의무 확대가 요망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모두 장부기장을 하도록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여 중국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업과 관련한 경비의 증빙을 철저히 수취하도록 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충분히 필요경비에 대한 관련증빙을 수취할 능력이 충분히 되는 것이다.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납세자의 교육 수준 향상 및 세무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교육이 뒷받침된다면 납세자의 수준이 현재보다 더욱 향상될 것이고 이는 대다수의 사업자가 스스로도 장부기장을 하여 탈세가 아닌 성실신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곱째, 탈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운동이 요망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당환급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출의

50%이상을 누락하여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관대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누락한 부분을 세무조사를 통해 발견되어도 과세관청은 누락한 부분을 과세만 할 뿐 더 이상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2007년부터 신고의무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적용하여 납세자가 부당하게 무신고·과소 신고하는 경우 40%까지 가산세를 부과⁴⁶⁾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세범처벌법을 살펴보면 징역형⁴⁷⁾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탈세는 곧 범죄’라는 인식과 동시에 필요경비 등 관련증빙을 철저히 수수하여 ‘증빙은 곧 절세’라는 인식하에 납세자들이 올바르게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국가 패소시 납세협력비용의 국가 부담을 하는 것이 요망된다. 현재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시간적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국가가 승소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납세자가 승소할 경우 단순히 과세된 세금만 취소할 뿐 납세자에 대한 시간적 손실, 정신적 부담 및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보상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소송까지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는 변호사 선임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심판청구 등에서 납세자가 승소하였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국가의 잘못된 과세로 인해 납세자는 실제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가 승소시 행정비용의 납세자 부담이 요망된다. 납세자의 불복에 대하여 국가가 승소하였다면 이에 대한 부담 역시 납세자가 부담하여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납세자들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아 자신의 권리에 대한 욕구 또한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다. 게다가 세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과세관청(국가)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과세가 아무리 적법하더라도 납세자는 불만을 갖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에 납세자는 과세관청

46) 국세기본법 제47조

국세청, 「가산세 집행실무 해설」, 2007

47) 조세범처벌법

제9조 3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제11조의② 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제11조의② 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4조 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제14조 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의 과세처분에 불복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또 다른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담당직원의 인건비, 심사청구 및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 확인 등에 따른 별도비용, 불복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서류의 복사비 등이다. 물론 납세자가 승소하였다면 과세관청의 과세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인 과세관청이 승소하였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과세관청은 적법한 과세처분을 하였음에도 행정비용이 낭비된 것이고 단순히 납세자가 이를 승복하고 세금을 납부만 한다면 역시 낭비된 행정비용에 대한 보상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비용 역시 또 다른 납세자가 국가에 납부한 세금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행정비용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이 없다면, 납세자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무분별한 불복의 제기가 계속해서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 6 장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추계과세소송과 관련된 심판청구 및 판례를 분석하여 국가 패소된 사건을 중심으로 판결결과의 주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납세자는 물론 국가의 경제적인 비용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추계과세제도의 이론적 배경들을 살펴보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추계과세에 대한 심판청구와 판례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유형별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심판청구 중 위장·가공 매입 부인후 결정이 33.3%이고,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이 30.7%로 이 두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판례 중에는 위장·가공 매입 부인후 결정이 50%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두 유형에 대한 판결 자료를 검토한 결과 판례에서는 국가 승소가 100%이었지만, 심판청구에서는 위장·가공 매입 부인후 결정에서는 국가승소율이 68.4%이며,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에서는 국가승소율이 48.6%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두 유형 중 국가 패소에 대한 심판청구의 판결 내용을 엄밀히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허위기장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추계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둘째, 허위기장률이 50%미만이고 30%이상인 경우에는 허위기장률 이외에 경정소득률과 표준소득률의 차이 및 기업의 규모와 기타 사실을 종합하여 추계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추계과세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심판청구 및 판례 동향 분석 및 위장·가공 매입 부인후 결정과 수입금액 누락분 결정에 대한 국가 패소에 대한 심판청구의 판례내용을 검토한 결과, 추계과세 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협력비용 증가(소송비용, 시간적 투자)이다.

둘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손실의 증가이다.

셋째, 과세관청의 과세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 증가이다.

넷째, 과세관청의 행정비용 낭비이다.

다섯째, 탈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미약이다.

이와 같은 추계과세소송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관청의 예규 및 내부지침 등의 정비가 요망된다.

둘째, 납세자에게 장부 기장 및 세금에 대한 교육의 확대가 요망된다.

셋째,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세금 교육 확대(교과서 이용 등)이다.

넷째, 세무대리인의 적극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요망된다.

다섯째, 간편한 세무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여섯째,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기장의무 확대가 요망된다.

일곱째, 탈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운동이 요망된다.

여덟째, 국가 패소시 납세협력비용의 국가 부담을 하는 것이 요망된다.

끝으로 국가 승소시 행정비용의 납세자 부담이 요망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심판청구 중 국가가 패소한 사례만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심판청구 중 국가가 승소한 경우와 패소한 경우를 모두 검토하여 양자를 비교하였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추계과세에 대한 심판청구 중 위장·가공 매입 부인후 결정과 수입 금액 누락분 결정에 대한 판결 내용만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심판청구에 대한 자료의 대상을 2006년부터 2008년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한계는 차후의 연구에서 개선하기로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추계과세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심판청구 중 국가가 패소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허위기장률이 50% 이상인 경우 모두 추계과세가 타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적극적인 법 개정 또는 사무처리 규정 등의 개정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 문 요 약

현재 국세의 대부분은 신고납부제도에 따라 납세자가 본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표준소득률제도는 소득금액을 납세자가 계산하도록 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가 장부 기장을 통해 소득세 신고하기보다 오히려 법에서 표준소득률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추계과세제도가 2003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로 변경되었는 바, 이는 필요경비를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변경되어 표준소득률제도와는 달리 납세자가 기본적인 필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준경비율제도로 변경된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추계과세와 관련한 심판청구 및 판례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허위기장률 50% 이상인 경우에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추계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둘째, 허위기장률이 50%미만이고 30%이상인 경우에는 허위기장률 이외에 경정소득률과 표준소득률의 차이 및 기업의 규모와 기타 사실을 종합하여 추계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추계과세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심판청구 및 판례 동향을 분석한 결과 추계과세 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협력비용 증가(소송비용, 시간적 투자)이다.

둘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손실의 증가이다.

셋째, 과세관청의 과세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 증가이다.

넷째, 과세관청의 행정비용 낭비이다.

다섯째, 탈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미약이다.

이와 같은 추계과세소송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관청의 예규 및 내부지침 등의 정비가 요망된다.

둘째, 납세자에게 장부 기장 및 세금에 대한 교육의 확대가 요망된다.

셋째,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세금 교육 확대(교과서 이용 등)이다.

넷째, 세무대리인의 적극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요망된다.

다섯째, 간편한 세무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여섯째,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기장의무 확대가 요망된다.

일곱째, 탈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운동이 요망된다.

여덟째, 국가 패소시 납세협력비용의 국가 부담을 하는 것이 요망된다.

끝으로 국가 승소시 행정비용의 납세자 부담이 요망된다.

본 연구에서 심판청구 중 국가가 패소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허위기장률이 50% 이상인 경우 모두 추계과세가 타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과세 관청에서는 적극적인 법 개정 또는 사무처리규정 등의 개정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정연, “개인사업자의 과세제도에 따른 차이와 선택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국세청, 「2007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08.
- 국세청, 「가산세 집행실무 해설」, 2007.
- 국세청,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 2008.
- 국세청,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2008.
- 김명호,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상원, “소득세의 추계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상원, “소득세의 추계과세제도 개선방안”, 「국세」 11월호, 2007.11.
- 김형상,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 박병완,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2007.
- 부산지방국세청, 「2005년 소득세법 요약」, 2006.
- 송영임, “기준경비율 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심상희,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안경선,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소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대규, “소득세법상의 추계과세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정철수, 김원율, 김홍엽 공저, 「세금이 적어야 나라가 산다」 (백산서당, 2001).
- 정해욱, “추계과세제도가 기장사업자의 신고소득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회계학과 박사학위논문, 2007.
- 조윤숙,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 참고법령 및 방문사이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http://www.nts.go.kr>.

<http://taxinfo.nts.go.kr/index.jsp>.



<부록> 언론에 비친 자영업자의 탈세 현황

(1) 조선일보 2007년 2월 27일 B02면

‘성형수술비를 깎아주는 대신 세금 추적 안 받는 현금을 받고 중국인 수천 명을 고용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전형적인 탈세수법이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나 고소득 자영업자들 312명은 최근 3년간 1조911억원의 소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5134 억원을 신고에서 누락시켜(소득탈루율 47.1%) 세금을 내지 않았다.

(2) 동아일보 2007년 2월 27일 A14면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

조사(조사기간)	조사대상(명)	추징세액(억원)
1차(2005년 12월~2006년 3월)	422	1,094
2차(2006년 3월~8월)	319	1,065
3차(2006년 8월 ~11월)	362	2,454
4차(2006년 11월 ~2007년 2월)	312	2,096

(3) 한국경제 2006년 10월 17일 A04면

지난해 변호사, 회계사 등 개인 사무실을 낸 전문직 사업자 100명 중에서 13명이 ‘연매출 24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 위원회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지난 해 사업자등록을 낸 2만2593명의 주요 전문직 사업자 중 연간 수입액을 2400 만원 미만(월평균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3061명으로 13.5%에 달한다”고 밝혔다.

(4) 국민일보 2007년 2월 27일 002면

서울 A입시학원 대표 이모(51)씨는 2004년 5월 시가 18억원짜리 건물을 사들였다. 연간 신고매출 1억원대에 비해 갑자기 늘어난 재산 증식과정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은 이씨를 탈세혐의자 명단에 넣고 최근 세무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이씨가 학원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2003~2005년 15억원의 소득을 숨겨온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씨에게 법인세 등 11억원을 추징했다. 입시학원, 대부업체 등 최근 호황을 맞은 업계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대형음식점과 유흥업소 등 고질적 탈세업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율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소득 가운데 숨긴 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5) 문화일보 2006년 2월 15일 004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탈루율이 46%, 1인당 탈루금액은 평균 200만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자영업자가구의 주택소유비율은 67.5%에 달해 '유리알지갑' 근로소득자 가구(59.3%)에 비해 8%포인트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여성경제학회에서 발표할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은 2003년 통계청 가계수지조사 자료대상인 7819가구의 소득자료와 같은해 과세자료에 의한 주택재산 보유 현황을 결합, 분석했다.

(6) 경향신문 2006년 11월 7일 002면

서울에 사는 병원장 김모씨(54)는 비보험 분야의 진료비를 모두 현금으로 받고,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연 1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두 1백 2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돼 50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특허전문 변호사인 김모씨(45)는 특허수수료 수입 6억원을 사무장의 처형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성공보수에 대한 수입료는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13억원의 소득을 누락시켰다.

(7) 서울신문 2007년 2월 27일 016면

4차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업종별 탈루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인원	실제 소득	신고 소득	탈루 소득	탈루율 (%)
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취급업소 중 수정신고 불응자	26	447	67	380	84.9
고액과외, 입시학원, 사채업자, 사행성 게임장 및 사치성 해외과소비자	51	1542	423	1119	72.6
집단상가,대형음식점,유흥업소 등 고질 적 탈세업종	118	3725	2168	1557	41.8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117	5197	3119	2078	40.0



감 사 의 글

먼저 수학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상사님과 교수님, 항상 격려하고 배려하며 용기를 심어준 가족과 직장동료, 같이 수학한 원우들, 그리고 주위의 고마운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논문이 나오기까지 2년동안 가르치고 심사를 맡아 성심성의껏 따뜻하게 지도해주신 박영병 교수님, 김태용 교수님, 김진황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와 법원의 판례 등 사례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등 논문 작성기간 중에 어떻게 해야 몰라서 몰었던 질문들에 항상 웃으면서 도와준 박인혁님, 신영승님, 남정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면서 좀 더 일찍 기회를 가지지 못한 아쉬움과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좀 더 열성을 다해 논문작성을 하지 못해 참으로 부끄럽지만, 작은 실무경험을 이 논문에 담아 추계과제제도의 개선과 국세행정 발전에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09년 1월

전 태 호